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브이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브이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vasset.co.kr)의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4월 2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6월 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②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③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④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

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⑤ 미국인(위 제1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에 따른 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04.27.)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호 (펀드코드: 36840)

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브이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투자비용

명칭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브이 스타신종 개인MMF 5호	없음	**0.360%**	0.240%	-	**0.3671%**	38	77	118	206	464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명칭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5.04.28 ~ 26.04.27	24.04.28 ~ 26.04.27	23.04.28 ~ 26.04.27	21.04.28 ~ 26.04.27	
브이 스타신종 개인MMF 5호	2003-04-28	2.49	2.81	3.08	2.56	2.50

비교지수	2.27	2.61	2.85	2.36	2.37	2.27
수익률변동성(%)	0.02	0.05	0.07	0.15	0.17	0.02

(주1) 비교지수 : (Call*50%)+(CD금리*50%)-신탁보수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단기금융(MMF))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정종희	1990	책임운용 전문인력	-	-	-	-	2.57	2.90	6.83
■ 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TI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d rowspan="5">주요투자 위험</td><td>구분</td><td>투자위험의 주요내용</td></tr>
<tr><td>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tr>
<tr><td>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td><td>채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신용등급 하락의 위험</td><td>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td><td>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td></tr>

<tr><td rowspan="2">매입방법</td><td colspan="2">17시 이전: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매입시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당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을 매수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당일의 공고된 기준가격(전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td></tr>
<tr><td>환매 수수료</td><td>없음</td></tr>

<tr><td>환매방법</td><td>17시 이전: 2영업일 기준가로 2영업일 지급
17시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로 3영업일 지급

*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환매시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당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 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을 환매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당일의 공고된 기준가격(전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실 수 있습니다.</td></tr>
</table>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vasset.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브이자산운용㈜ (대표번호: 02-3703-9800/ 인터넷 홈페이지: www.vasset.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 발생일	2026년 6월 9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v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v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영업보고서,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vasset.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vasset.co.kr)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0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10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 10
5. 인수에 관한 사항 ····· 10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11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2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12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13
4. 집합투자업자 ····· 1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14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1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15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15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 20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20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24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 28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29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30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32
1. 재무정보 ····· 3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35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 36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39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3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41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41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42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43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43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44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44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47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48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1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52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호 (협회코드 3684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MMF)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없음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가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판매)기간 : 추가형으로서 모집개시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www.vasset.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호 (협회코드 3684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3.04.28	최초설정
2004.06.2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변경
2005.04.27	랜드마크스타신종MMF투자신탁개인5호로 명칭변경
2005.06.07	매입, 환매 기준시간 적용
2005.06.27	보수 변경
2005.10.31	감독규정변경에 따른 운용제한 변경
2007.03.22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래가격제로 변경
2007.10.05	ING스타신종MMF투자신탁개인5호로 명칭변경
2009.04.27	자본시장통합법에 의거 ING 스타신종법인MMF 5호로 명칭 변경
2009.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 반영
2010.04.15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간 보수율 조정, 과세내용 변경
2010.11.30	- 투자신탁의 해지 및 수시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이익 분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준일 현재 재무제표 등 업데이트(정기 갱신) - 운용전문인력 변경(박상신->금지원)
2011.05.30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위험등급분류 관련 안내 문구 추가
2012.04.04	운용전문인력 변경(금지원->강혜영)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변경 등
2012.07.06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법 개정(2011.8.4) 사항 반영 (수시공시 관련) 등
2012.07.18	판매보수 인하
2013.02.01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07.26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2.6.29)사항 반영 등 투자대상자산 추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2014.01.07	자산운용회사 명칭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 명칭변경 등 -"ING자산운용"에서"맥쿼리투자신탁운용"으로 변경 -"ING 스타신종개인MMF 5호"에서 "맥쿼리 스타신종개인MMF 5호"으로 변경

2014.02.21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 사항 반영 등
2014.05.29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015.05.20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등
2016.07.02	펀드 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및 위험등급 변경
2017.07.14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재무정보 갱신 등
2018.05.23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2018.07.24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재무정보 갱신 등
2019.08.05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9.09.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반영 및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2020.08.20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2021.05.13	자산운용회사 명칭 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 명칭 변경 등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서"파인만자산운용"으로 변경 -"맥쿼리 스타신종개인MMF 5호"에서 "파인만 스타신종개인MMF 5호"으로 변경
2021.09.03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2021.11.11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2022.04.27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3.07.07	최신 결산일 기준 정기갱신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3.02.20.시행)
2024.07.11	최신 결산일 기준 정기갱신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4.03.01)반영
2025.03.28	자산운용회사 명칭·주소 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 명칭 변경 등 -"파인만자산운용"에서 "브이자산운용"으로 변경 -"파인만 스타신종개인MMF 5호"에서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호"으로 변경
2025.06.25	최신 결산일 기준 정기갱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6.04.29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6.06.09	최신 결산일 기준 정기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개별투자자의 저축기간 혹은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브이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6층 (삼성동, KB우준타워) (전화) 02-3703-98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6년 04월 27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단기금융(MMF))				운용 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정종희	1990	책임운용 전문인력	-	-	-	-	2.57	2.90	6.83	- 現브이자산운용 TI운용부문 채권팀 - 흥국증권 채권금융본부 (2025.03~2026.03) - 한양증권 채권시장센터 (2023.11~2025.03) -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2022.09~2023.11) - 키움증권 FICC운용 (2021.06~2022.09) 유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2019.05~2021.06)
■ 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정종희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TI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인력	운용 기간
윤성주	2022.04.27 – 2026.04.28
정종희	2026.04.29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단기금융, 개방형, 추가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운용한다. 다만, 채무증권(법 제4조 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40%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

투자대상	주요 내용
양도성예금증서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

	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어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단기대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예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기사채등	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단기사채등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 매수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 매수
기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나.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①	**신용등급 제한**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
②	**신용등급 제한 예외**	위의 신용등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③	**신용등급의 하락시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위 ②의 1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합니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	**신용등급의 하락시 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②의 2, 3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

		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 자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는 행위 가. 채무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어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로 한다)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5%로 한다). 이 경우 가 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일인 투자 및 거래한도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1) 만기 30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 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다. 이 투자신탁이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취득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
대여 및 차입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국채증권의 만기제한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환매조건부 매도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가중평균 잔존만기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잔존만기일이 **75**일을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금지자산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또는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특정 자산 10% 미만 투자시 자산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현금 나. 국채증권 다. 통화안정증권 라.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양도성 예금증서 (2)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3)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단기사채 마. 환매조건부매수 바. 단기대출 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특정 자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30% 미만 투자시 자산 취득 제한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상기 "10% 이상 투자" 부문의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나.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상기 "10% 이상 투자" 부문 라목의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다. "상기 10% 이상 투자" 부문의 마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적용예외)

1.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투자 및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라. 기타 제한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75일 이내로 하여 시가평가 투자신탁 상품 대비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 채권 및 어음등은 만기 1년 이내 상위 2개 등급 이내로 제한하여 금리위험 및 신용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자산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Call*50%)+(CD금리*50%)-신탁보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이 단기금융자산으로 대표적인 단기금융자산인 콜론과 CD금리를 각각 50%씩 반영하고, 펀드의 신탁보수를 차감한 것을 비교지수로 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MMF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채권, 기업어음증권 등의 자산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정기예금 및 RP 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 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 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 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

	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동성 위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0.00%**로, 브이자산운용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아래)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6단계 등급 체계 중 6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닌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매우 낮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매우 낮은 투자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설정이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추후 매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브이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 기준표]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 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 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브이자산운용㈜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개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법인투자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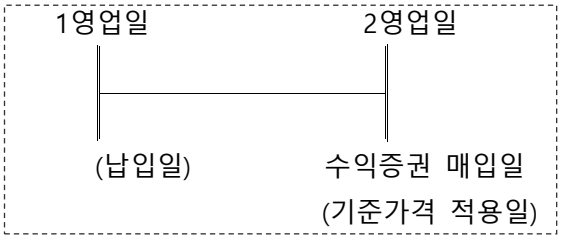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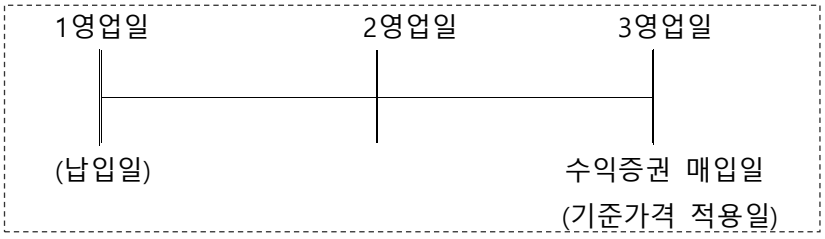

(다)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매입시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당일의 공고된 기준가격(전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입**

하실 수 있습니다.

(라)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가)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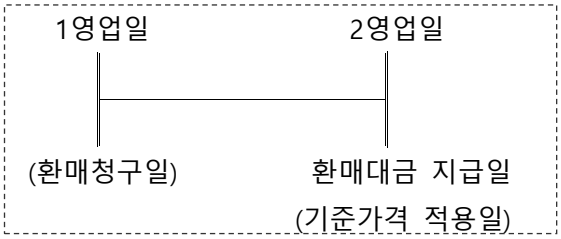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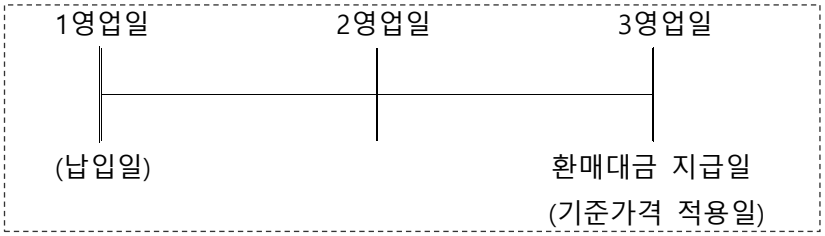

(다)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환매시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 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당일의 공고된 기준가격(전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 환매대금은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상기일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일 매입•환매 적용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입 및 환매가 가능**합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회사가 MMF를 투자자의 **매입대금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MMF를 매입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②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MMF를 매입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환매청구일 전일에 산출하여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는 경우**

①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MMF를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②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MMF를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7)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환매 가능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환매수수료 : 없음	V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vasset.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 및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적용예외)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평가방법에 따라 장부가격에 의거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의 시가로 평가)하거나 매각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 칭	수수료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 칭	지급비율(연,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	0.0900	0.2400	0.0220	0.0080	0.3600	0.0071	0.3671	-	0.3671	0.0043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4.28 ~ 2026.04.27]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5,584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

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4.28 ~ 2026.04.27]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3,421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	38	77	118	206	46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며 참조용으로 기재됩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3 기(2025.04.28 - 2026.04.27)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22기(2024.04.28 - 2025.04.27)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21기(2023.04.28 - 2024.04.27)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호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23기	제 22기	제 21기
	(2026.04.27)	(2025.04.27)	(2024.04.27)
운용자산	102,004,088,019	82,793,852,765	59,385,260,320
증권	92,746,206,819	72,899,751,577	56,659,038,87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257,881,200	9,894,101,188	2,726,221,45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96,476,408	553,419,557	240,105,496
자산총계	102,600,564,427	83,347,272,322	59,625,365,81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8,561,244	55,830,856	42,965,168
부채총계	58,561,244	55,830,856	42,965,168
원본	100,050,136,389	80,761,347,915	57,495,838,383
수익조정금	530,160,765	487,504,859	204,936,217
이익잉여금	1,961,706,029	2,042,588,692	1,881,626,048
자본총계	102,542,003,183	83,291,441,466	59,582,400,648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 호 [단위 :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3기	제 22기	제 21기
	(2025.04.28 - 2026.04.27)	(2024.04.28 - 2025.04.27)	(2023.04.28 - 2024.04.27)
운용수익	2,255,870,043	2,288,655,228	2,078,535,001
이자수익	2,275,972,163	2,296,026,218	2,046,345,434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20,102,120	-7,370,990	32,189,567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294,164,014	246,066,536	196,908,953
관련회사 보수	278,821,537	233,904,399	186,489,094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5,342,477	12,162,137	10,419,859
당기순이익	1,961,706,029	2,042,588,692	1,881,626,048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의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호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4.28 - 2026.04.27)			전기(2024.04.28 - 2025.04.27)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2,306,400	3	0.0001	1,904,830	3	0.0001
합계	2,306,400	3	0.0001	1,904,830	3	0.0001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해당 펀드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23기(2026.04.27) 금 액		제22기(2025.04.27) 금 액		제21기(2024.04.27)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9,257,881,200		9,894,101,188		2,726,221,450
1. 현금및현금성자산	50,155,453		12,828,612		50,796,486	
2. 예치금	9,207,725,747		9,881,272,576		2,675,424,964	
3. 증거금						
대출채권		51,205,486,693		33,667,146,959		20,282,160,722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6,000,000,000		11,600,000,000		7,800,000,000	
3. 매입어음	45,205,486,693		22,067,146,959		12,482,160,722	
4. 대출금						
유가증권		41,540,720,126		39,232,604,618		36,376,878,148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41,540,720,126		39,232,604,618		36,376,878,148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596,476,408		553,419,557		240,105,49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596,476,408		553,419,557		240,105,496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02,600,564,427		83,347,272,322		59,625,365,816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58,561,244		55,830,856		42,965,168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8,561,244		55,830,856		42,965,168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58,561,244		55,830,856		42,965,168
자 본						
1. 원 본	100,050,136,389		80,761,347,915		57,495,838,383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491,866,794		2,530,093,551		2,086,562,265	
(발행좌수 당기: 100,050,136,389 좌	이익잉여금	1,961,706,029		2,042,588,692		1,881,626,048
전기: 80,761,347,915 좌	수익조정금	530,160,765		487,504,859		204,936,217
전전기: 57,495,838,383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102,542,003,183		83,291,441,466		59,582,400,64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02,600,564,427		83,347,272,322		59,625,365,816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23기(2025.04.28-2026.04.27) 금 액		제22기(2024.04.28-2025.04.27) 금 액		제21기(2023.04.28-2024.04.27)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275,972,163		2,296,026,218		2,046,345,434
1. 이 자 수 익	2,275,972,163		2,296,026,218		2,046,345,434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6,572,516		8,035,502		36,270,932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2,408,106		3,442,240		32,041,606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4,164,410		4,593,262		4,229,325	
7. 기타거래차익					1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6,674,636		15,406,492		4,081,365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19,167,610		3,508,273		2,132,847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7,507,026		11,898,219		1,948,518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294,164,014		246,066,536		196,908,953
1. 운용수수료	71,289,557		59,805,060		47,681,774	
2. 판매수수료	190,105,775		159,480,452		127,151,887	
3. 수탁수수료	17,426,205		14,618,887		11,655,433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5,342,477		12,162,137		10,419,859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961,706,029		2,042,588,692		1,881,626,048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1960723		0.025291662		0.032726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브이 스타신종개인MMF 5호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5.04.28 - 2026.04.27	808	808	2,086	2,118	1,894	1,920	1,001	1,025
2024.04.28 - 2025.04.27	575	575	1,269	1,290	1,036	1,052	808	833
2023.04.28 - 2024.04.27	514	514	904	921	843	858	575	596

주1) 2025.04.28 - 2026.04.27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290,310,125좌/2,290,310,125원

주2) 2024.04.28 - 2025.04.27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294,323,813좌/2,294,323,813원

주2) 2023.04.28 - 2024.04.27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872,625,512좌/1,872,794,048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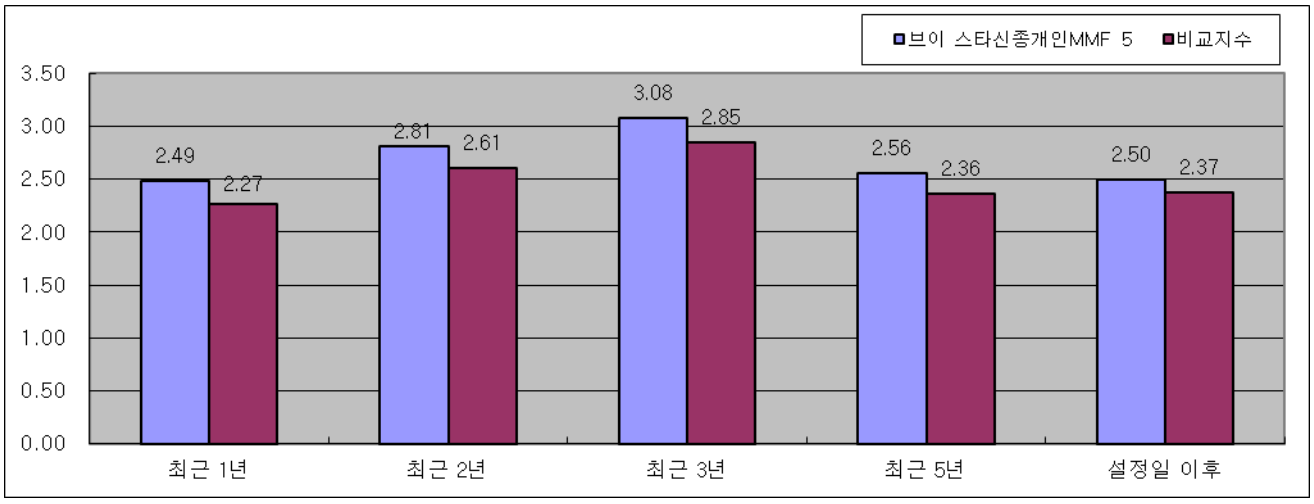

(단위: %)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5.04.28 ~ 26.04.27	24.04.28 ~ 26.04.27	23.04.28 ~ 26.04.27	21.04.28 ~ 26.04.27	03.04.28 ~ 26.04.27
스타신종개인 MMF 5	2.49	2.81	3.08	2.56	2.50
비교지수	2.27	2.61	2.85	2.36	2.37
수익률변동성(%)	0.02	0.05	0.07	0.15	0.17

주1) 비교지수 : [(Call*50%)+(CD금리*50%)-신탁보수]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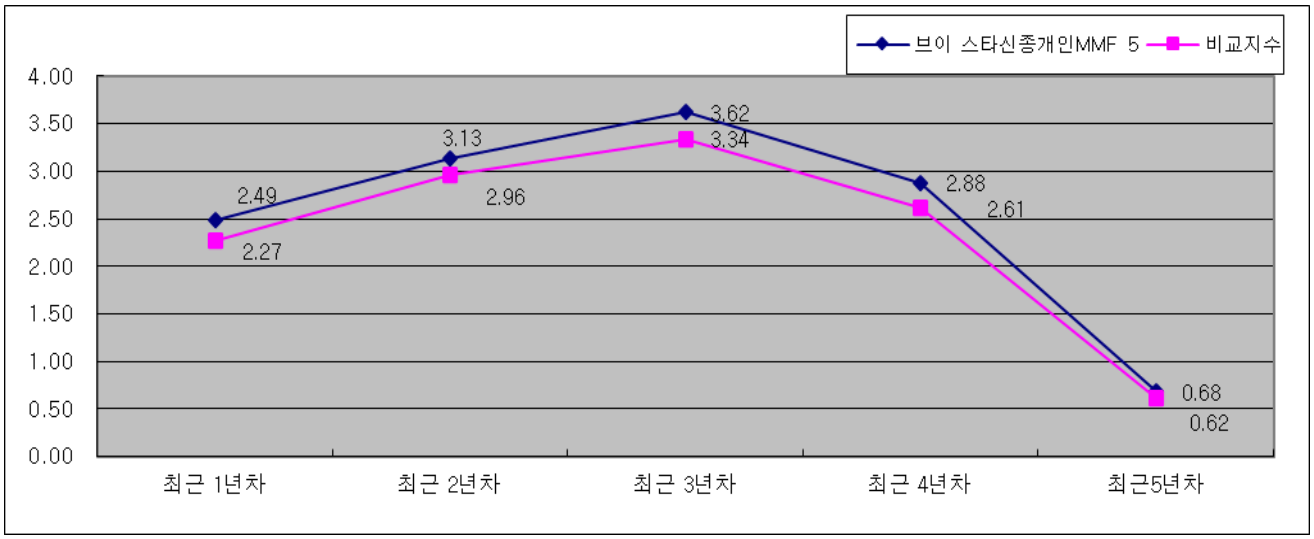

(단위: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5.04.28 ~ 26.04.27	24.04.28 ~ 25.04.27	23.04.28 ~ 24.04.27	22.04.28 ~ 23.04.27	21.04.28 ~ 22.04.27
스타신종개인 MMF 5	2.49	3.13	3.62	2.88	0.68
비교지수	2.27	2.96	3.34	2.61	0.62

주1) 비교지수 : [(Call*50%)+(CD금리*50%)-신탁보수]

주2)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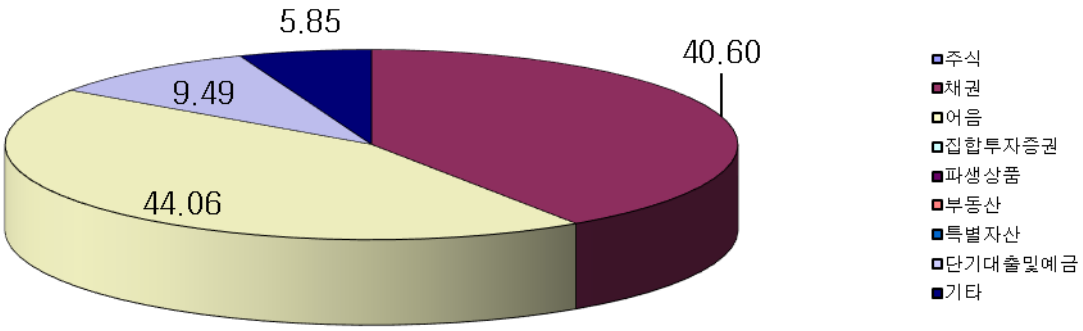

[2026.04.27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417	452	0	0	0	0	0	0	97	60	1,026
	(0.00)	(40.60)	(44.06)	(0.00)	(0.00)	(0.00)	(0.00)	(0.00)	(0.00)	(9.49)	(5.85)	(100.00)
합계	0	417	452	0	0	0	0	0	0	97	60	1,026
	(0.00)	(40.60)	(44.06)	(0.00)	(0.00)	(0.00)	(0.00)	(0.00)	(0.00)	(9.49)	(5.85)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현황]

[2026.04.27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채권종류						합 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화채	회사채	
금액	20	0	40	0	0	357	417
/비중	(4.80)	(0.00)	(9.58)	(0.00)	(0.00)	(85.62)	(100.00)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현황]

[2026.04.27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신용평가등급									합 계
	RF	AAA	AA-이상	A-이상	BBB-이상	BB-이상	B-이상	C,CC,CCC	무등급	
금액	397	0	0	0	0	0	0	0	417	397
/비중	(95.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95.2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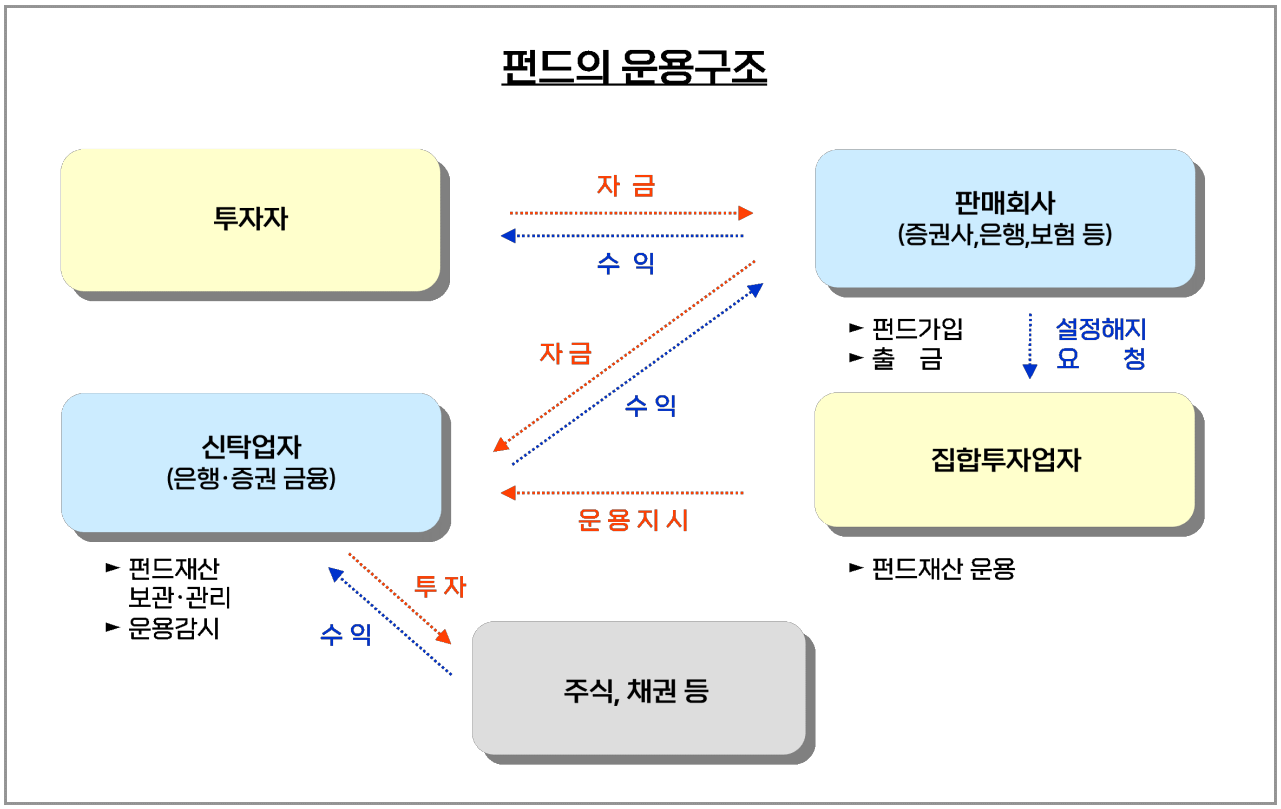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브이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6층 (삼성동, KB우준타워) 연락처 : 02-3703-9800 인터넷홈페이지 : www.vasset.co.kr
회사 연혁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1988.04.06 한국증권투자자문(주) 설립 1997.07.08 외환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1999.05.28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랜드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1989.10.05 범한투자자문(주) 설립 1996.08.24 장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1998.12.29 국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2.05.09 Morgan stanley group에 매각 2002.05.28 랜드마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5.04.26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과 합병 **<ING 자산운용 주식회사>** 2006.09.08 ING자산운용(주) 설립 2007.10.01 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합병

	2013.11.27 Macquarie Investments 3 Limited의 인수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2013.12.27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상호변경 2021.04.09 파인만1호주식회사가 100% 지분인수 **<파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2021.04.09 파인만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브이자산운용 주식회사>** 2025.03.08 브이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자본금	15,049,570,000원
주요주주현황	주식회사 브이인베스트먼트: 지분율 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재무상태표(억원)			요약 손익계산서(억원)		
계정과목	'25.12.31	'24.12.31	계정과목	'25.12.31	'24.12.31
현금및예치금	5.8	50.8	영업수익	46.7	39.9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91.5	42.8	영업비용	36.0	34.0
유형자산	10.9	0.9			
무형자산	0.02	1.2			
기타자산	24.2	15.6			
자산총계	132.4	111.3	영업이익(손실)	10.7	5.9
충당부채	0.3	1	영업외수익	0.7	0.2
기타부채	12.2	2.5	영업외비용	0.1	-
부채총계	12.5	3.5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11.3	6.1
자본금	150.5	150.5	법인세비용	-	-
자본잉여금	25.2	25.2	당기순이익(손실)	11.3	6.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	-2.1	기타포괄이익(손실)	1	0.2
이익잉여금(결손금)	-54.5	-65.8			
자본총계	120.0	107.8	당기총포괄이익(손실)	12.1	6.3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4.27 현재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967	28	210	21	369	330	4,892	201	1,972	8,99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연락처 : 1588-9999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⑧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현대차증권 18~20층) 연락처 : 02-2180-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

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 P&I㈜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4층 ☏ 02-398-39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 총좌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 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관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

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고(당사 홈페이지 공시 등)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 원본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후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임의 해지의 방법 이외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 또는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금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헤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vasset.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주식 관련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중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1)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선정절차 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 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증권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 혹은 집합투자기구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고 불립니다.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의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규약(또는 계약)에 의거 펀드의 성과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를 성과보수가 없는 펀드와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투자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고객이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수익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